발송번호: 9-5-2020-075588988

발송일자: 2020.11.02.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거절결정서

출 원 인 성 명 손무비 (특허고객번호: 420200388396)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길 20, 2911동 906호 (장지동,

화성동탄2엔에이치에프아이원)

대 리 인 성 명 김영관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39 , 4층(논현동,

태원빌딩)(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출 원 번 호 10-2020-0075905

발 명 의 명 칭 고정 접이식 뚜껑이 구비된 컵라면 용기 및 그 제조방법

2020.10.06.자 접수된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및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에 의하여 다시 심사한바 2020.08.06.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합니다.

[다시 심사한 결과]

□ 심사 대상 청구항 : 제1, 6항

□ 이 출원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 법조항

순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	관련 법조항
1	청구항 제1항, 제6항	특허법 제29조제2항

[거절결정의 이유]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 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 래 -

인용발명1: 공개특허공보 제10-2012-0060575호(2012. 6. 12.) 인용발명2: 공개특허공보 제10-2015-0081494호(2015. 7. 15.)

*특허요건판단 기준일: 2020. 6. 22.

1. 2020. 8. 6. 의견제출통지서의 주요 내용

이 출원의 청구항 전항은 인용발명1 및 2의 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하 '전번거절이유'라 함).

2. 2010. 10. 6. 보정서 및 의견서의 주요 내용

출원인은 보정서에서 청구항 1에 보정 전 청구항 2 내지 5의 구성을 병합하고, 청구항 2 내지 5는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통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접힘유지수단(22)의 구성은 인용발명1 및 2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거절이유 해소 여부 및 출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1. 청구항 1에서 뚜껑(20)의 일측에 돌출 손잡이부(21)가 돌출 형성되고, 돌출 손잡이부(21)에는 접힘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접힘 유지수단(22)이 구비되며, 접힘 유지수단(22)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삽입홈(23)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인용발명1(단락[21]~[29], 도면1~6 참조)에서 뚜껑(20)의 일측에는 손잡이부(22)가 돌출 형성되고, 손잡이부(22)에는 접힘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고정부재(30)가 형성되는 것이 개시되어 있고, 고정부재(30)를 탈착할 수 있는 삽입홈을 형성하는 정도의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항 1에서 접힘 유지수단(22)은 뚜껑(20)의 온도 변화에 따른 색상이 변화되는 시온안료층(22a)이 표면에 코팅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인용발명2(단락[34]~[37],도면1~2 참조)에서 용기뚜껑(120)의 상부에 온도 변화에 따라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는 온도감응층(131)이 형성되는 것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의 고정부재(30)에 인용발명2의 온도감응층(131)을 부가하는데 따르는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의 현저한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위 거절이유 및 전번거절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1 및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위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2. 청구항 6은 보정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다시 살펴보아도 전번거절이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항 1,6은 보정에도 불구하고 전번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절결정합니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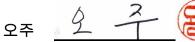
2020.11.02.

특허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일반기계심사과

심사관 오주





<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및 분할출원 안내 >>

- 1. 출원인은 이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심판청구기간)에 보정을 하여 특허청(출원과)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정 없이 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청구기간(재심사 청구 이후는 제외)에는 분할출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시에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 2. 심판 청구기간(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만료일 전까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세서 등의 보정은 반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 시 반드시 '재심사청구 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042-481-3382(담당심사관 오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 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